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2007. 11. 26
발 의 자 : 강성국 위원회 6

1. 제안이유

2007.10.4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해당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관련규정에 맞게 조정함(안 제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입법예고 : 생략

라. 협의사항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
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6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1조(설치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마포구"라한다)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(이하 "검사위원"이라 한다)의 선임·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 1 조 (설 치) ----- 「 지 방 자 치 법 시행령」 제83조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